

예 산 총 칙

2015년도 추경 3 회

제 1 조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354,121,418	10,623,643
일반회계		330,561,388	9,916,842
특별회계		23,560,030	706,801
기타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23,560,030	706,801
	농어촌소득금고사업특별회계	2,349,961	70,499
	섬진강댐특별회계	5,149,211	154,476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219,000	6,570
	옥정호상수원보호구역관리특별회계	4,576,443	137,293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451,864	13,556
	기반시설특별회계	78,963	2,369
	상수도사업특별회계	6,744,184	202,326
	하수도사업특별회계	1,287,909	38,637
	문화마을조성사업특별회계	2,702,495	81,075

제 2 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세입 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해당없음"으로 한다

제 4 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조서"와 같다

제 5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2,965,000천원으로 한다

제 6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지방채차입한도액은 8,100,000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제 8 조 최종 추경예산성립 후 국가 또는 도 등으로부터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액 전액이 교부된 경비는 당해년도 예산으로 간주한다